



- 「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 
제4조, 제20조 내지 제23조

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라. 합 의 : 해당없음

마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조례개정의 주요 취지는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규모를 “군세의 15%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을 “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” 등의 예산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군세의 15%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,
- 본 조례는 2005. 11. 4일 제정된 후 2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, 지원 규모는 조례 제정 당시에는 군세의 3%, 1차 개정(2007. 12. 6)에서는 군세의 7%, 2차 개정(2008. 12. 30)에서 군세의 15%로 확대되어 왔습니다.
- 조례 심사를 함에 있어 “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” 등의 예산지원이 있는 시설사업의 한계와 지원금액을 어떻게 설정 할 것인지, 우리군의 재정 여건상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인지와,
- 그리고 제3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,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 부담 기숙사비와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교통수단 및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.

## 6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문 : 기숙형 고등학교 학생부담 기숙사비와 통학에 대한 교통수단 경비는 어떤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?
- ◎ 답 :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산어촌학교 학생에 대한 학습권보장과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지원의 사업범위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해두기 위함.

- 문 : 특별법에 의거 국도비 등 예산지원이 되는지, 지원이 없다면 법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?
- 답 : 시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.
- 문 :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에는 저축이 안되는지?
- 답 : 2010년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.
- 문 : 대응 투자비율에 있어서 시군에서 몇%를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인지, 그렇지 않다면 30%범위로 한도를 설정할 수는 없는지?
- 답 : 시군에서 몇%를 부담하라는 것은 없으나 부담 액수가 높으면 사업 순위에 있어서 우선권이 부여되고 있음. 한도를 정하기는 곤란합니다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09. 12. 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